

인도네시아 유제품 수입 관련 법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T 자카르타 지사

□ 구제역 발생 국가에서는 수입 금지

○ 관련 법령

- 2014년 가축 및 동물위생에 관한 법령 제 41호(UU No. 41 Tahun 2014)
- 2014년 농업부 장관령 제 139호(Permentan No. 139 Tahun 2014)

○ 인도네시아는 구제역 발생국가 제품을 수입허가 하지 않으며, 육류와 유제품의 수입은 Free FMD(구제역-Foot and Mouth Disease) 국가 또는 지역(Zone)과, WOAHA(세계동물보건기구) / OIE(국제수역사무국)에서 FMD 안전국가로 확인된 국가 또는 지역(Zone)에 한함.

○ 관련 법령 2014년 41호 36조 E에 의거, 인도네시아 정부는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 또는 지역(zone) 내에서 수입을 하고, 요건은 동 법령 59조 2항에 따라 법령 2014년 제 139호 에 언급되어 있음.

○ 법령 2014년 139호에 의거,

- Article 7, Article 8 육류와 유제품은 Free FMD 국가 또는 지역(Zone) 으로부터 수입함
- Article 12 WOAHA / OIE에서 FMD로부터 안전한 국가로 확인된 국가에서 수입함
- Article 13 인도네시아는 구제역발생국가의 제품수입을 허가하지 않음

○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쇠고기 가격 상승, 쇠고기 자급자족 목표달성 실패, 축산물 수입에 있어 호주 의존 심화 등으로 인해 쇠고기 수입선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음. 실제로 지난 2014년 2월부터 일본으로부터 냉동육을 수입하기 시작했음. 한편 일본은 과거 구제역이 발생했으나 현재는 구제역 청정국으로 지위를 회복하였음.

□ 유제품 수출 관련

○ 유제품의 인도네시아 수출요건

- 인도네시아로 유제품 수출 시, **제품시험 테스트, 인수공통감염병(예: 구제역), 검역, 식품안전인증**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허가**를 받은 상태여야 함.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정한 사업체로 HACCP 및 할랄인증을 받아야 함.

1) 기술적인 요건

- a. 브루셀라증, 결핵과 같은 질병으로 무해한 축산에서 생산된 원료이어야 하며, 이에 대해 인증을 받아야 함.
- b. 최소한 인도네시아국가표준(SNI)에 따라 미생물 및 찌꺼기 오염에 대한 시험테스트를 거쳐야 하며, 이에 대해 인증을 받아야 함.
- c. 미생물균 검사에서 음성반응을 보여야 하며, 이에 대해 인증을 받아야 함.
- d.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방부제 및 중독성 약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이에 대해 인증을 받아야 함.
- e. 우유 및 유제품의 전 생산과정에 대해 HACCP 및 할랄인증을 획득해야 함.

2) 수출업자의 요건

- 우유 및 유제품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려는 회사 및 법인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 함.
 - a. 법인설립허가증(SIUP) 사본
 - b. 법인납세번호(NPWP) 사본
 - c. 사업자등록증(STDP) 사본
 - d. 일반업자수입인증번호(APIU) 사본
 - e. 회사 대표의 신분증 사본
 - f. 회사 정관 사본 및 변경사항
 - g. 축산, 검역, 수의과, 국민건강 분야 지방정부기관의 추천서 사본
 - h. 축산물이력번호(NKV) 사본
 - I. 건강안전 증명서 사본
 - j. 원산지 증명서 사본
 - k. 검사분석결과 증명서 사본

- l. 할랄인증서 사본
- m. 청구서 사본
- n. 작성한 현황문서 (이전에 수출경험이 있는 경우)

□ 유제품 수입업체 요건

- 관련 법령 : 동물 및 동물제품의 수출입에 관한 2013년 무역부장관령 46호
(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Trade No. 46 / M-DAG / PER / 6/2013 on the Import and Export of Animals and Animal Products)
- 5조 1항 에 가공식품(축산물의 부산물을 가공한 식품)을 취급하는 회사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 아래의 서류들을 동봉하여 전자 행정 서비스에 등록하여야 함.
 - a. 회사정관;
 - b. 사업증인서 (SIUP) 또는 축산 위생 사업허가
 - c. 사업자 등록증 (TDP);
 - d. 수입등록번호 (API);
 - e. 기준에 부합하는 도축장의 소유 혹은 도축장과의 계약 증명
 - f. 창고 (냉장창고) 와 가공식품 운송 수단의 소유 · 임차의 증명

□ 유제품 분류

- 관련 법령 : 식료품 분류에 대한 인도네시아 식약청 청장령 2015년 제1호
(Peraturan Kepala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Republik Indonesia Nomor 1 Tahun 2015 Tentang Kategori Pangan)

※ 식료품 분류

- 01.0: 카테고리 02.0(동식물 지방 또는 기름을 포함하는 제품)에 포함하는 것을 제외한 유제품
- 01.1: 우유 및 우유를 원료로 한 음료
- 01.2: 발효 우유 및 Hidrolisa Enzim Renin 공정 유제품(카테고리 01.1.2에 포함하는 것을 제외한)
- 01.3: 연유 및 이와 유사한 것
- 01.4: 생크림 및 동종제품
- 01.5: 우유분말가루, 생크림분말가루 및 이와 유사한 것

01.6: 치즈 및 이와 유사한 것

01.7: 우유를 원료로 한 디저트 식품 (예, 푸딩, 요거트, 과일첨가 요거트)

01.8: 유장* 및 유장 제품 (유장 치즈 제외)

*유장: 젖 성분에서 단백질과 지방 성분을 빼고 남은 맑은 액체

○ 유제품으로는 우유, 생크림, 버터밀크, 치즈, 유장 등이 있으며, 유제품은 젖 소, 물소, 말, 염소, 양 등 가축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원료로 함.

○ 일반적인 유제품 분류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

제품	유지방 함량(%)	탈지유 총 밀도(%)	기타
일반 우유	3% 초과	8% 초과	
무지방 우유/탈지우유	1.25% 미만		단백질 함량 2.7% 미만
저지방 우유	1.25~3% 미만		단백질 함량 2.7% 초과
합성착색료 성분을 함유한 우유	2% 초과	12% 초과	
우유성분을 함유한 음료	0.3% 초과		
요거트	3% 초과	8% 초과	젖산 0.9% 초과
저지방 요거트	1.25~3% 미만	8% 초과	젖산 0.9% 초과
무지방 요거트	1.25% 초과	8% 초과	젖산 0.9% 초과
연유	8% 초과		
크리머 음료(非우유)-액상형태	3.25% 초과	8.25% 미만	
크리머 음료(非우유)-분말형태	26% 초과		액상함량 5% 미만
휘핑크림	35% 초과		

○ 기본적으로 유제품 여부는 HS코드(수입코드)에 따라 상품의 주성분을 기준으로 분류함.

○ 우유 함유량이 5% 이하인 경우 유제품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무알콜 음료 카테고리(우유맛 음료)로 분류됨.